

「2026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하반기 학력인정평가(제18차)」 공고 안내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지원센터에서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2026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하반기 학력인정평가(제18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1. 학력인정평가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에 근거, 교육감이 인정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력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력인정평가 신청 자격

- 학력인정평가의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으로 학습자 등록을 한 자
- 2)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한 자

※ 학력인정 기준 시수는 서류 접수(우편) 마감일 이내 이수한 시수까지 인정

3) 학력인정 신청 기준 연령을 초과한 자

① 초등학교 학력인정 기준 연령 : (만) 12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② 중학교 학력인정 기준 연령 : (만) 15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4) 학력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간을 충족한 자

①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업·학습기간 4년 이상

② 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업·학습기간 2년 이상

※ 이수기간은 학업중단 이전에 이수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학업기간(학기 단위)과
본 사업 학습자 등록 이후 이수한 학습기간(2026.08.31.기준)을 합산

3. 학력인정의 종류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4. 학력인정의 기준

□ 학력인정 대상 학습경험

1) 학교 정규교육과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에서 교육과정 이수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학교 교
육과정 이수

2) 학습지원 프로그램

① 교육감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② 교육감이 위탁 지정 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포함

③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온라인교육과정

3) 학교 밖 학습경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 또는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②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③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

④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른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⑤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5조, 제2조제3항, 제2조제5항, 제2조제6항, 제2조제9항, 제2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 전수생

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10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⑦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60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⑧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내일이룸학교(舊취업사관학교) 학습과정 이수

⑨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체 실습·훈련 과정

□ 학력인정 기준 시수

- 학교 정규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필수 및 선택과정 이수 시수를 누적하여 초등학교 4,692시수, 중학교 2,652시수 이수 시 학력 인정
- 학력인정 기준 시수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학력인정 기준 시수〉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필수 이수	국어	632시수	221시수
	사회(역사)/도덕 * 중학교 과정은 역사 포함	272시수	255시수
	인성(봉사활동 포함)	30시수	30시수
선택 이수		3,758시수	2,146시수
학력인정 기준 (총)시수		4,692시수	2,652시수

※ 학력인정 기준 (총)시수는 정규교육과정 이수 시수의 80% 수준(방송통신 중학교 이수 시수 준용)

※ 필수 이수 시수는 정규교육과정 이수 시수의 50% 적용(「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1시수는 정규교육과정 기준(초 40분, 중 45분)을 준용하되, 시도별 자율 운영 기준을 반영

- 1) (필수 이수과정) 국어, 사회(중학교 과정은 역사 포함)/도덕, 인성(봉사활동 포함)은 해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 (선택 이수과정) 필수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학습자의 소질·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함.

※ 구체적인 시수 계산은 아래 학습경험별 학력인정 기준을 참조

□ 학습경험별 학력인정 기준

1) 학교 정규교육과정

① 학습자가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 학기, 즉 학습을 완료한 학기까지의 이수 시수를 학기 단위로 인정 (<표1>, <표2> 참조)

- ※ 1학기 인정 기준: 출석일수 64일 이상(출석일수=수업일수-결석일수)
- ※ (예시) 2학년 학습자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2학년 수업일수가 85일이고, 결석일수가 15일인 경우, 출석일수는 70일이므로 한 학기를 인정
- ※ (예시) 3학년 학습자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3학년 수업일수가 105일이고, 결석일수가 65일인 경우, 출석일수는 40일이므로 한 학기를 미인정
- ※ (예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습을 완료한 학기는 2학년 1학기이므로 정규교육과정은 총 1,224시수를 인정(국어 177시수, 사회과 204시수, 선택과목 843시수)(<표2> 참조)
-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은 초등학교 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 당 기준 80% 인정, 중학교 과정은 학습을 완료한 학기를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실제 이수 시수의 80% 인정
- ※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은 정원의관리일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실제 이수 시수의 100% 인정

<표 1> 초등학교 인정학기별 교과 누적시수(봉사활동 제외)

구 분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필수	국어	90	180	270	360	442	524	606	688	770	852	934
	사회/도덕					54	108	162	216	270	324	378
선택		192	384	576	768	986	1,204	1,422	1,640	1,899	2,158	2,417
창체활동		80	160	240	320	361	402	443	484	525	566	607
합 계		362	724	1,086	1,448	1,843	2,238	2,633	3,028	3,464	3,900	4,336

- ※ 초등 1,2학년: 1학기당 362시수(국어 90시수, 선택 192시수, 창체 80시수) 인정
- 초등 3,4학년: 1학기당 395시수(국어 82시수, 사회과 54시수, 선택 218시수, 창체 41시수) 인정
- 초등 5,6학년: 1학기당 436시수 인정(국어 82시수, 사회과 54시수, 선택 259시수, 창체 41시수) 인정

<표 2> 중학교 인정학기별 교과 누적시수(창체·봉사활동 제외)

구 분		1-1	1-2	2-1	2-2	3-1
필수	국어	59	118	177	236	295
	사회(역사)/도덕	68	136	204	272	340
선택		281	562	843	1,124	1,405
합 계		408	816	1,224	1,632	2,040

※ 1학기당 408시수(국어 59시수, 사회과 68시수, 선택과목 281시수) 인정

2) 학습지원 프로그램

- ① 해당 프로그램에 부여된 인정 시수(이수 시간)를 이수 시수로 인정
-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이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3) 학교 밖 학습경험

- ①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대상 및 기준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기준을 따르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력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기준은 p.10의 표를 참고하되,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이수 시수의 인정 제한

- 1) 교육감이 지정·위탁한 1개 기관에서 이수한 시수는 전체 학력 인정 기준 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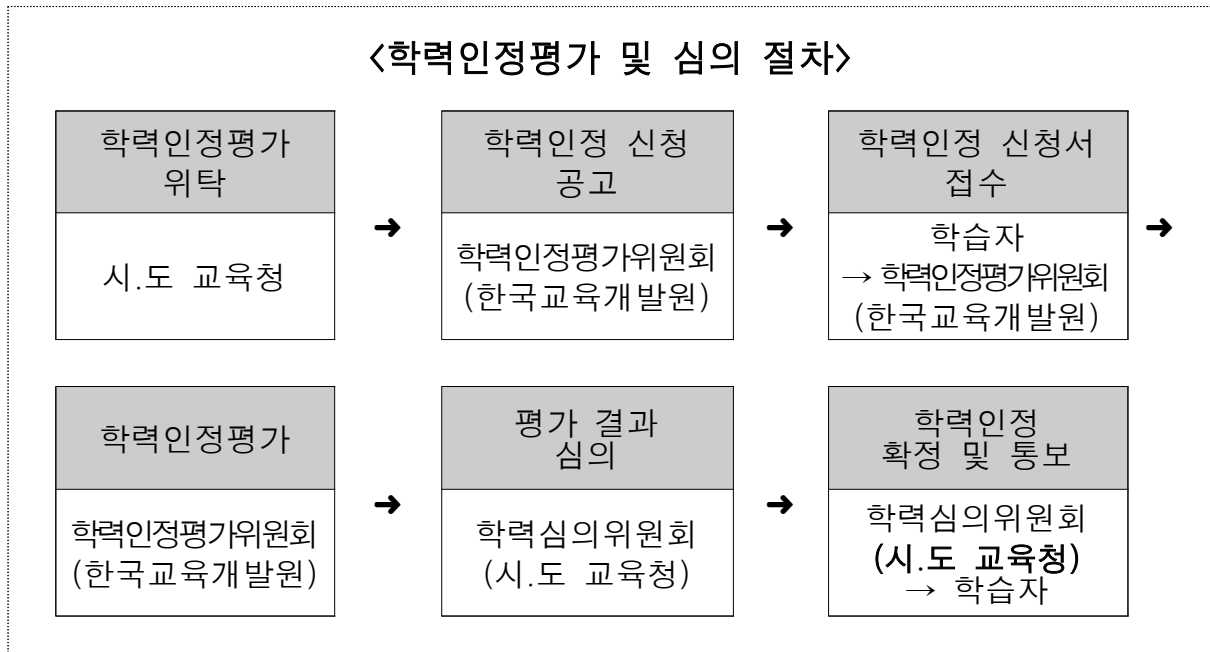
※ 단, 교육감 직접 개설·운영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육과정, 방송중 온라인 프로그램,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소년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 운영 과정은 50% 초과 제한 미적용

- 2)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인정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함.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3) 동일 종목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만 인정함.

5. 학력인정 절차



6. 심의 결과 통보

- 최종 학력인정 확정 및 통보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7. 학력인정의 취소

- 학습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 재평가·심의 절차 후 학력 취소 가능

8.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서류 접수: 2026. 8. 18.(화) ~ 2026. 8. 24.(월)까지

※ 제출서류 일체(원본)를 우편으로 제출.

※ 우편은 8.24.(월) 소인까지 유효함.

○ (우편 주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417호
디지털교육지원센터 꿈이음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① <서식1> 학력인정신청서 1부

② <서식2> 학력인정평가신청서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서식4> 학력인정평가 제출서류 확인 양식 1부

⑤ *주민등록등본 2부

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신청 학교급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 증명서) 1부
(‘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방송중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출력본 각 1부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증 출력본 각 1부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 각 1부

- 학교 밖 학습경험 증빙서류 각 1부

- 봉사활동 이수증(또는 이수증명서) 각 1부

※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https://www.1365.go.kr>),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인증관리, 청소년자원봉사 두볼에서 이수한 봉사활동을 인정함.

※ * 표시 서류는 학력인정평가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9. 사전 컨설팅 신청

※ 사전 컨설팅 결과는 학력인정평가위원회의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6. 8. 4.(화) ~ 2026. 8. 11.(화) 13:00까지
- 접수 방법: 꿈이음 홈페이지(www.educerti.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학습현황 ‘사전 컨설팅 신청’ 이용
- 결과 안내: 마이페이지- ‘사전 컨설팅 신청 내역’ 확인 필요

○ (사전 컨설팅 제출서류)

- ① <서식2> 학력인정평가신청서 1부
- ②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③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신청 학교급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방송중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출력본 각 1부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증 출력본 각 1부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 각 1부
 - 학교 밖 학습경험 증빙서류 각 1부
 - 봉사활동 이수증(또는 이수증명서) 각 1부

10. 문 의 처

-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지원센터 꿈이음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 (043-530-9716)

[붙임1] 학교 밖 학습경험 증빙서류

[붙임2] 근거법령

[붙임 1] 학교 밖 학습경험 증빙서류

구 분	내 용
① 자격증 취득	- 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자격증 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함.
② 검정고시 과목 합격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수 과정	- 교육과정 이수내역서(과목별 이수시간 포함) 1부 - 교육과정편성표 1부
④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 교육과정 이수내역서(과목별 이수시간 포함) 1부 - 교육과정편성표 1부
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이수자, 전수생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 1부
⑥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 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우수 숙련기술자: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⑦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 졸업·수료증 1부 - 생활기록부(학적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⑧ 내일이룸학교	- 해당 훈련시설에서 발급한 수료증(이수증)과 이수시간이 명시된 서류 1부
⑨ 산업체 실습 훈련과정	- 해당 훈련시설에서 발급한 수료증(이수증)과 이수시간이 명시된 서류 1부

※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